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3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백혜련・이병진・이재강

문진석 • 민홍철 • 김준혁

서미화 • 이용우 • 서영석

김한규 · 송기헌 · 김기표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"사회복지사업"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을 규정하고있음.

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·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「스토킹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음.

이에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 조제1호허목).

법률 제 호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허목을 고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허.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	1		
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			
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			
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			
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			
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			
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			
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			
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			
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			
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			
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			
말한다.			
가. ~ 퍼. (생 략)	가. ~ 퍼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허.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		
	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		
<u>허.</u> (생 략)	<u>고.</u> (현행 허목과 같음)		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		